

5·18 44년 만에 또...총·칼·군홧발에 짓밟힌 민주주의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과 당직자, 시민들이 헌정유린·내란수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관련기사 2·3·4·5·6·8·13면

윤석열 대통령, 선포 6시간 만에 국회 의결로 해제 ‘1980년 악몽’ 되살아난 지역 민심...퇴진 요구 ‘활활’ 오월단체·시민사회·법조계·대학 등 규탄 성명 ‘붓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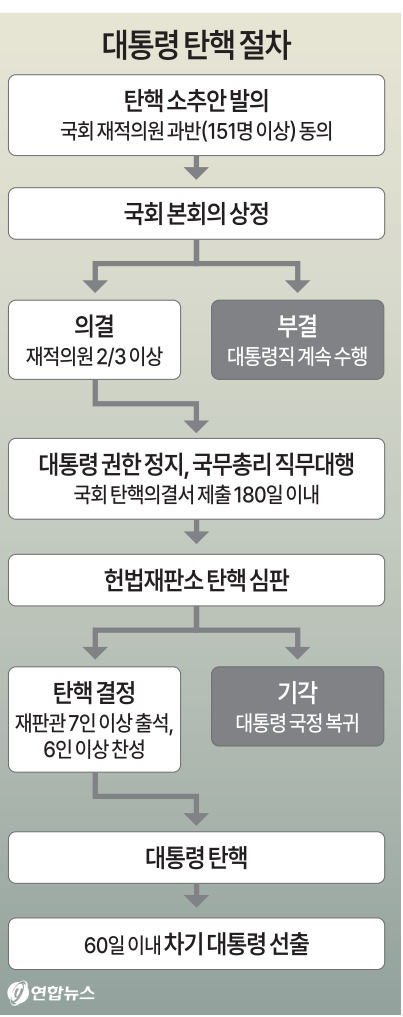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44년 만에 또 총과 칼, 군홧발에 짓밟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를 장악하려는 군부대에 긴박하게 맞선 민주주의의 순간들을 가슴 졸이며 뜬 눈으로 지켜본 광주·전남 사·도민들은 44년 전 오월 영령들이 그랬듯 광장으로 다 시나와 독재자의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의 봄 악몽 재현...불안고조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윤 대통령 이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소식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접한 지역민 대부분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30분 만에 ‘계엄 포고령’ 1호가 발표되고 국회 의사당에 군·경이 모이고 있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상황이 1979년 12·12 사태와

너무나 겹쳐 보여서다. 지역민들은 자연스럽게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던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자와 맞서 싸우자”며 5·18민주광장으로 모여달라는 ‘긴급 호소’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심판의 시간 알린임을 위한 행진곡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4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400여명의 참석자들은 개회 선언 후 5·18민주광장에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전일빌딩245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 ▲헌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 공모, 동조 세력 체포·구속 ▲내란수괴 윤석열 하수인 어용 내각 총사퇴 ▲국회의 윤석열 탄핵 즉각 추진 등 4개 요구 사항을 도출했다. 또한 오는 8일까지 매일 오후 7시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결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 등 “내란죄 명백”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도 긴급 성명을 발표해 “비상계엄 조치가 온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연상케 하는 느닷없고 황당한 선

포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오월어머니집도 “합당한 사유 없이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며 “1980년 5월 가족을 잃은 우리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등 법조계 “법치 파괴·위헌” 광주·전남 법조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했던 비상계엄을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했다. ▶2면에 계속 /안재영·주성학 기자



野6당,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6·7일 표결...탄핵 사유 “헌법 위반 계엄령”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나와야 가결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5

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수위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어제, 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시)본 본회의에(탄핵소추안) 보고한다”며 “6일(시)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운)로 통하는 국민의힘 의원 180명을 포함해 재적의원 190명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

까지 3개월 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 뒤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 외교 등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전라남도 JeollaNamdo

남도의 맛갈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남도 음식거리

맛있는 만남이 있는 행복한 남도음식거리에서 남도의 맛과 멋을 즐겨보세요.